

시행령 288/2026/NĐ-CP 기업등록 관련 행정위반 과태료 기준 개정

2026년 7월 21일 시행

시행령 122/2021/NĐ-CP 개정·보충

최대 **1억 동** 과태료: 2025년 7월 1일 이전 설립 기업이 **실제소유자 정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**

시행령 122/2021/NĐ-CP

처벌 규정 없음

시행령 288/2026/NĐ-CP

6.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가장 최근의 기업등록사항 변경등록 또는 변경통지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에 기업의 실제소유자 정보(있는 경우)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정보(있는 경우)를 보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7,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22/2021/NĐ-CP 제44조 제6항 (시행령 288/2026/NĐ-CP 제2조에 의해 추가)

실제소유자 미신고: 기업 설립 시 과태료 5,000만~1억 동

시행령 122/2021/ND-CP

4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5,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:

- a) 등록 없이 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;
- b)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후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영업정지·활동중지·영업종료를 요구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.

시행령 288/2026/ND-CP

4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5,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:

- a) 등록 없이 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;
- b)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후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영업정지·활동중지·영업종료를 요구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.
- c) **설립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에 기업의 실제소유자 정보(있는 경우)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정보(있는 경우)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.**

법적 근거: 시행령 122/2021 제46조 제4항 c목 및 제5항 d목 (시행령 288/2026 제3조에 의해 추가)

기업등록사항 변경등록의 지연 및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대폭 인상

위반 정도	시행령 122/2021/ND-CP	시행령 288/2026/ND-CP (2026.7.21.부터)
1~10일 지연	경고	경고
11~30일 지연	300만~500만 동	1,000만~2,000만 동
31~90일 지연	500만~1,000만 동	3,000만~4,000만 동
91일 이상 지연	1,000만~2,000만 동	5,000만~6,000만 동
미등록 / 변경 미통지	2,000만~3,000만 동	3,000만~7,000만 동

법적 근거: 시행령 122/2021 제44조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7항 (시행령 288/2026 제2조에 의해 개정)

서류 허위 신고(실제소유자 정보 포함): 과태료 3,000만 ~ 7,000만 동 인상

시행령 122/2021/ND-CP

기업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사항 변경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기업등록 서류 또는 기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서류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2,000만 동 이상 3,000만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시행령 288/2026/ND-CP

과태료 ~~2,000만~~ 3,000만 동 이상 ~~3,000만~~ 7,000만 동 이하 — 기업 **설립** 등록 서류, **지점·대표사무소 영업등록 서류**; 기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서류, **지점·대표사무소·영업장소 활동 변경등록 서류**; ~~기업등록증 또는 기업등록사항 변경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~~ 기업등록사항 변경통지 서류, **영업장소 설치 통지 서류**, 기업 해산 서류, 기업등록 서류 및 실제소유자 정보 변경통지 서류상의 **실제소유자 정보와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정보**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.

법적 근거: 시행령 122/2021 제43조 (시행령 288/2026 제1조에 의해 개정)

국가기관에 실제소유자 정보 미제공: 최대 과태료 7,000만 동

시행령 122/2021/ND-CP

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1,000만 동 이상 1,500만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:

- a)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;
- b) 요구에 따른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.

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1,500만 동 이상 2,000만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:

- a) 영업정지 요구에도 조건부 사업 분야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;
- b) 상호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요구에 따라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.

시행령 288/2026/ND-CP

1. 과태료 ~~4,000만~~ 2,000만 동 이상 ~~4,500만~~ 3,000만 동 이하 — 요구가 있을 때 보고 또는 정보 제공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(실제소유자 정보 포함).

2. 과태료 ~~4,500만~~ 4,000만 동 이상 ~~2,000만~~ 5,000만 동 이하 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:

- a) 요구에 따라 **영업을 정지하거나 종료하지** 않은 경우 — 조건부 투자·사업 분야, **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시장접근 분야**의 영업;
- b) 상호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요구에 따라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.

3.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, 또는 허위·부정확하게 보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5,000만 동 이상 7,000만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실제소유자 정보 포함).

법적 근거: 시행령 122/2021 제48조 (시행령 288/2026 제4조에 의해 개정) — 국가기관에 대한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의무가 추가됨

실제소유자 명부 미보관: 최대 과태료 7,000만 동

시행령 122/2021/ND-CP

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3,000만 동 이상 5,000만 동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:

- a) 사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;
- b) 사원명부 또는 주식 발행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;
- c) 본점에 기업 상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지점·대표사무소·영업장소의 명칭을 표기 또는 게시하지 않은 경우;
- d) 본점 또는 정관에 정한 다른 장소에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.

시행령 288/2026/ND-CP

2. 과태료 ~~3,000만~~ 4,000만 동 이상 ~~5,000만~~ 7,000만 동 이하 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:

- a) 사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;
- b) 사원명부 또는 주식 발행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;
- c) 본점에 기업 상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지점·대표사무소·영업장소의 명칭을 표기 또는 게시하지 않은 경우;
- d) 본점 또는 정관에 정한 다른 장소에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;
- d) 사원명부·주주명부에 출자자 및 주주에 관한 정보를 규정대로 완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;**
- e) 규정에 따른 기업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(기업의 실제소유자 명부 포함);**
- g) 기업이 1년간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사업등록기관 및 세무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.**

법적 근거: 시행령 122/2021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(시행령 288/2026 제5조에 의해 개정·보충)

DEDICA의 변호사와 법률전문가가 언제든지 지원해 드립니다. 심층 법률자문과 서비스는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.

기업 및 투자
형사

상시 법률자문
인수합병(M&A)

분쟁 해결
상표 및 저작권



주소

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171,
A&T빌딩 11층



전화

+84 39 969 0012



이메일

david@dedica-law.com



웹사이트

www.dedica-law.com



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받으세요.